

방산 수출통제 절차개선을 위한 선진사례 분석

조윤경, 양정은, 유나영, 장일호
 국방기술진흥연구소
 e-mail:yk0854@dtaq.re.kr

Analysis of advanced Cases for Improving Defense Export Control Procedures

YunGyeong Cho, JeongEun Yang, NaYeong Yu, IlHo Chang
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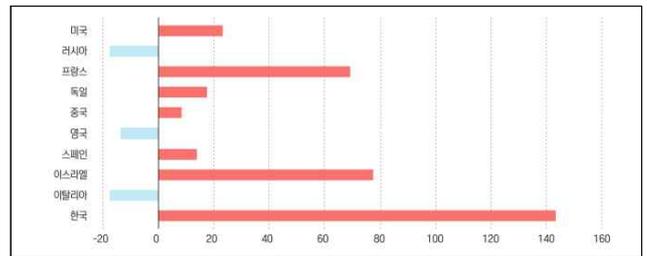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의 무기 수출량은 10위 수준이며,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'10년 11위에서 '18년 9위 증가하여 선진권이다. 이처럼 국방과학기술 수준 상승 및 방산수출 증가는 국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. 본 연구에서는 방산선진국인 미국, 영국의 군용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 및 절차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 반영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군용 전략물자 수출통제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1. 서론

대한민국의 무기 수출국 비중 변화율은 2010-2014년 대비 2015-2018년에 그림 1과 같이 143% 증가하여 세계 10위이며[1]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선진 국가 중 9위이다.[2] 대한민국의 방산수출 증가 및 국방과학기술 수준 상승에 따라, 기술유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기술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.

군용물자 수출시 관련법규에 따른 분류 및 허가기관은 그림 2와 같다. 이때, 방위사업법에 규제를 받는 방산물자/국방과학기술의 경우 수출·입 업체는 사전 등록 후 수출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,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군용물자품목은 수출·입 등록 업체가 아니라도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무허가 수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다. 또한, 국내 법령은 군용물자의 특성(군사적 유용성/성능, 연구개발 비용 등)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적인 품목에 대한 행정 과대소요와 중요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등이 부실해 질 수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방산선진국인 미국, 영국의 군용물자 수출통제 절차 및 기준을 분석하고, 국내 적용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군용 전략물자 수출통제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.



[그림 1] 2010~2014년 대비 2015~2019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비중 변화(%)



[그림 2] 관련 법령에 따른 군용물자 분류

2. 본론

2.1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

2.1.1 법적근거 및 군용물자 분류

미국은 전략물자를 크게 이중용도품목, 군용물자품목, 원자력관련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. 이 중 군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최상위 법령은 무기수출통제법

(AECA³⁰⁾)으로서 “해외 군사 판매 승인”, “군사 수출 통제”, “미사일 및 미사일 장비 또는 기술통제 등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
무기수출통제법 법안 22 "Foreign Relation" 제39장 "Arms Export Control"을 근거로 제정된 국제무기거래규정(ITAR³¹⁾)은 군용품목 및 용역 수출입 통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사항으로 "미 군용물자품목 목록"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미 군용물자는 국제무기거래규정 제120관 6조부터 8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. 이는 군용품목, 주요 및 중요군사장비로 나눌 수 있으며 표 2와 같다. 주요군사장비는 미 군용물자 목록 중 군사적 유용성 또는 성능이 높아서 특별한 수출통제가 필요한 품목으로, 그림 3과 같이 미 군용물자 목록 앞쪽에 별표(*)로 표시되어 있다. 중요군사장비는 주요군사장비 중 개발비나 생산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. 특히, 1,400만 달러 이상의 중요군사장비(NATO 회원국 등은 2,500만 달러) 등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이 필요한 내용은 표 3과 같다.

[표 1] 미국의 군용물자품목 목록

제121관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	
Category	내용
Category I	화기, 근접공격무기 등
Category II	총포 및 화포
Category III	탄약 및 군수품
Category IV	발사체, 유도미사일 등
Category V	화약, 활성물질 등
Category VI	수상함 및 특수 해군장비
Category VII	지상차량
Category VIII	항공기 및 관련장비
Category IX	군 훈련용 장비 및 훈련
Category X	개인보호장비
Category XI	군용 전자장비
Category XII	사격 통제, 레이저 등
Category XIII	재료 및 기타 품목
Category XIV	화학 및 생물 작용제가 포함된 물질
Category XV	우주선 및 관련 품목
Category XVI	핵무기 관련 품목
Category XVII	달리 열거되지 않은 기밀 품목 등
Category XVIII	지형성 에너지 무기
Category XIX	가스터빈 엔진 및 관련장비
Category XX	잠수함 및 관련품목
Category XXI	기타
제121.1조-제121.15조 예비	
제121.16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부속서	

[표 2] 미국의 군용물자 분류

품목	정의	설명
군용품목	제120.6조	• 제121.1조에 지정된 품목 또는 기술자료 • 물리적인 형태, 모델, 실물모형 또는 기타 물품에 기록되거나 지정된 기술자료 포함
주요군사장비	제120.7조	• 군사적 유용성 또는 성능이 높아서 특별한 수출통제가 필요한 품목
중요군사장비	제120.8조	• 주요군사장비 중 5천 달러 이상의 독자적 연구개발비 또는 2억 달러 이상의 총 생산비가 드는 장비

Category I - 화기, 근접공격무기 및 전투용 산탄총 *(a) 구경 0.05inch(12.7mm) 이하의 수동 및 반자동 화기류 Category I - Firearms, Close Assault Weapons and Combat Shotguns *(a) Nonautomatic and semi-automatic firearms to caliber .50 inclusive(12.7mm)
--

[그림 3] 주요군사장비 예시

[표 3] 미국 의회승인 품목

의회 승인이 필요한 품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NATO 회원국, 오스트레일리아, 이스라엘, 일본, 뉴질랜드 및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총 1,400만 달러 이상의 중요군사장비 또는 5,000만 달러 이상의 군용물자 및 국방용역을 수출할 경우 • NATO 회원국, 오스트레일리아, 이스라엘, 일본, 뉴질랜드 및 대한민국으로 국가에 총 2,500만 달러 이상의 중요군사장비 또는 10,000만 달러 이상의 군용물자 및 국방용역을 수출할 경우 • 총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의 미 군용물자품목 Category I에 해당하는 화기를 수출하는 경우

2.1.2 수출업체 신고제도

미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정 제122관(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)에 따라 군용물자의 수출, 제조 또는 국방용역을 위해서는 “등록”이 반드시 필요하다. 등록의 목적은 특정 제조 및 수출 활동에 관계된 정보를 미국 정부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. 등록 신청서에는 미국인 임원(예 : 최고경영자, 사장, 총무 등)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, 신청자는 주식회사 또는 미국에서 사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.

2.2 영국의 수출통제 제도

2.2.1 법적근거 및 전략물자

영국의 수출통제는 2004년 5월 1일에 발표된 Export Control Act 2002를 따른다. 이는 군용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에 관한 법률로, 상품의 수출, 기술이전, 해외 기술지원의 제공 및 통제된 상품의 무역

30) AECA : Arms Export Control Act

31) ITAR :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

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통제하기 위함이다. 2008년에는 Export Control Act 2002를 시행하기 위한 The Export Control Order 2008이 제정되었으며, 군용통제목록, 폭발관련 통제목록, 안보 및 준군사용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영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은 표 4와 같으며, 이는 영국 및 EU 규정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들을 하나로 모은 항목이다. 영국 전략물자 통제목록에 해당하는 품목은 항목에 따라 적합한 라이선스를 발급[5] 받아야 한다.

[표 4] 영국의 전략물자 통제목록 목록

구성	관련근거
개요	-
영국 군용물자품목	Schedule 2 to the Export Control Order 2008
영국 이중용도품목	Schedule 3 to the Export Control Order 2008
유럽연합 비 군사총기 목록	Annexes I to Regulation(EU) NO.125/2019
유럽연합 인권목록	Annexes II, III&IV of Regulation (EU) No.125/2019
영국 안보 및 인권 목록	Articles 4A and 9 to the ECO 2008
영국 방사능 원천목록	Schedule to the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(Control) Order 2006
유럽연합 이중용도품목	Annex I to Council Regulation(EC) No.428/2009
유럽연합 이중용도품목	Annex IV to Council Regulation(EC) No.428/2009

2.2.2 군용물자 분류 및 수출업체 신고제도

유럽연합에 설립된 모든 사업체 또는 개인은 세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EORI³²⁾ 번호를 받아 국가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한다. EORI 번호를 받은 자는 수출품목에 따라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행 받아야 한다. 이는 영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전담하는 SPIRE 시스템³³⁾의 분류 조언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다. 군용물자 수출관련 라이선스는 대표적으로 개방일반(Open General), 표준개별(Standard Individual), 개방개별(Open Individual)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.

[표 5] 영국의 군 관련 대표적인 라이선스

라이선스	설명
개방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부 군사품목, 총기, 이중용도품목 적격한 모든 사용자가 사용 가능하며, 수출품 수량의 제한이 없음 최종사용자 및 용도 확인 필요

표준개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무기 원료 등 통제된 군용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업체에 대한 승인 필요 상품명, 가치, 목적지 및 수량에 제약이 있음 최종사용자에 관한 자료 필요
개방개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정 군용품목, 이중용도품목 및 방사성 소스 국가에 대한 심사 필요 수출국, 업체명, 물품에 제약이 있음

2.3 국내 수출통제 제도

2.3.1 법적근거 및 군용물자의 분류

국내 군 관련 품목은 그림 2와 같이 군용물자와 방산물자/국방과학기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의 정의는 표 6과 같다.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이며, 군용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이다. 이때 방산물자/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에서 허가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중요도가 낮은 품목이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행정 과대소요와 중요한 품목의 경우 부실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.

[표 6] 방산물자/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 정의

품목	정의
일반방산물자	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,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.
주요방산물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전차·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레이더·피악식별기 그 밖의 통신·전자장비 야간투시경 및 그밖의 광학·열상장비 전투공병장비 화생방장비 지휘 및 통제장비 기타
국방과학기술	군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·제조·가동·개량·개조·시험·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
전략물자	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한다. - 이중용도품목 + 군용물자품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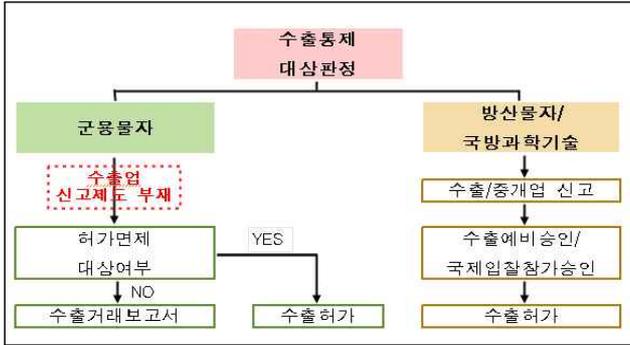
2.3.2 수출업체 허가 절차

수출통제 대상에 따른 허가절차는 그림 4와 같다. 이는 군용물자와 방산물자/국방과학기술로 나눌 수 있다. 방산물자/국방과학기술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수

32) EORI :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

33) http://www.state.gov/ddtc_public

출·중개업 신고를 한 뒤 수출예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수출허가신청을 하는 반면, 군용물자의 경우 무등록 중개업체가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무허가 수출시 그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추후 문제발생시 국제적인 외교 마찰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.



[그림 4] 수출통제 대상에 따른 허가절차[6]

2.4 국내·외 수출통제제도 차이점

2.4.1 군용물자의 중요도

미국과 영국에서는 군용물자를 수출할 경우 중요도에 따라 통제기준을 달리한다. 미국은 개발비, 총 생산비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중요군사장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의회인증이 필요하며, 영국은 수출품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치, 수량, 목적지 등에 심사가 이루어진다. 이와 달리 국내 수출 품목은 개발 시기, 비용 및 민감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수출통제 절차가 수행된다. 표 7은 중요도에 따른 국내·외 군용물자 수출통제 내용을 나타내었다. 국내 무기체계의 경우 기술보호기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역설계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익 손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. 따라서 상품의 특성에 따른 수출통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2.4.2 수출업체 신고제도

미국의 경우 군용물자 제조 및 수출활동을 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“등록”해야 하며, 영국은 일부 통제된 군용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개별 라이선스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수출업체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고 있다. 국내의 경우 군용물자의 수출업체에 대한 심사가 부재(표 8 참조)하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, 향후 수출국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용전략물자 수출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[표 7] 국내·외 군용물자 중요도에 따른 분류

국가	미국	영국	대한민국
중요도에 따른 분류	중요군사장비 의회허가품목	표준개별 라이선스	-
내용	특정 품목에 대해 강화된 통제기준	특정 품목, 수량 등에 대해 제약	모든 수출품목 절차 동일

[표 8] 국내·외 수출업체 사전승인 절차

국가	미국	영국	대한민국
수출업체 신고제도	등록	표준개별 라이선스	-
내용	제도/수출 활동 시 의무화	수출업체에 대한 심사 수행	군용물자 수출업체 신고관련 규정 부재

3. 결론

본 연구는 중간산출물로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 개선을 위한 미국 및 영국 등 선진사례를 분석하였으며, 향후 군용물자 “업체 신고제도 및 중요도에 따른 관리방안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.

참고문헌

- [1] “2018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”, 국방기술품질원, 2018년.
- [2] “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”, 국방기술 품질원, 2020년.
- [3] 방위사업법, <http://www.law.go.kr>(2020년 3월 31일 개정)
- [4] 대외무역법, <http://www.law.go.kr>(2020년 2월 4일 개정)
- [5] 영국 국방무역통제국, http://www.state.gov/ddtc_public
- [6] 2020 방산육성·국방조달 길라잡이, 방위사업청, 2020년.